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9 - 98호

마포로1구역 제12·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9.21.)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146호(1980. 5. 19.)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93호(1986. 7. 23.)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70호(2018. 3. 15.)로 정비구역·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8-158호(2018.11.2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마포로1구역 제12·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내용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7월 11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명 칭 : 마포로1구역 제12·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4-4번지 일대
- 면 적 : 2,568.60 m^2 (대지 면적: 2,234.00 m^2 , 정비기반시설: 334.60 m^2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코스마포피에프브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호재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28, 4층(논현동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9. 7. 11.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건폐율(%)	연면적(㎡)	용적률(%)	층수 (지하/지상)	주용도	비고
2,234.00	1,339.19	59.95	28,958.40	1,019.34	4층/24층	관광숙박시설, 업무시설(오피스텔),근 린생활시설, 전시장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 분	규모(㎡)	관리처분 대상자별 내역				비 고
		토지등소유자 (환지시설)	일반분양 (체비시설)	보류시설	기부채납	
관광숙박시설	20,611.27	-	20,611.27	-	-	
업무시설 (오피스텔)	7,104.67	7,104.67	-	-	-	
근린생활시설	1,196.07	1,196.07	-	-	-	
전시장	46.39	-	46.39	-	-	
계	28,958.40	8,300.74	20,657.66	-	-	

다. 신설 또는 용도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1)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종 류	명칭	규모(㎡)	설치비용(천원)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도 로	소로2-1, 소로1-9, 중로2-208, 소로1-1	243.83	4,588,475	코스마포 피에프브이 주식회사	사업시행자 / 설치 후 마포구청 무상귀속
녹 지	공덕 제1녹화	62.67	1,164,970		
주차장	도화 제2주차장	28.10	547,410		
계		334.60	6,300,855		

2)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해당 없음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완료 (2019. 3. 9)